

재심의 사유 (요지)							
심의의견	심의일자 :			종합판정			
	심의위원	가	부	심의위원	가	부	

【4】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증개정조례안

제출년월일 : 1993. 3. 25.

제출자 : 양주군수

제안이유

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 공무원만 퇴직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별정직 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.

주요골자

-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또는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 되어 퇴직이 예정되는 별정직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 할

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무원법개정법률(1991. 5. 31 제4370호)과 관련된 자구를 수정함

(안 제23조 제7항)

양주군 조례 제 호

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증개정조례안

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증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⑦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과 법 제6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 기간 및 근무상한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.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
제23조(특별휴가) ① ~ ⑥ (생략) ⑦ 법 제4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명예 퇴직이나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을 할 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	제23조(특별휴가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 ⑦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 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 또는 규칙 으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거나

현 행	개 정
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.	근무상한기간 및 근무상한기간연장기간 이 만료되어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 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.

【 5 】 양주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

제출년월일 : 1993. 3. 25.

제출자 : 양주군수

제안이유

청소년육성법이 1992. 12. 31로 폐지되고 청소년기본법이 1991. 12. 31 법률 제44778호로 제정되어 1993. 1. 1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여러사항을 성과적으로 운영하고자 함

주요골자

- 제명의 변경(양주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 → 양주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)
- 법령규정의 적용 변경 (제1조)
- 위원회 구성의 인원 및 대상조정 (제2조제1항, 제3항)
- 위원회 기능 및 임기 신설 (제3조, 제5조)

양주군 조례 제 호